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운식 의원 외 21명)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8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이운식 · 배한철 · 장대진 ·
이진락 · 김인중 · 황병직 ·
박성만 · 강영석 · 조현일 ·
김지식 · 박영서 · 박권현 ·
조주홍 · 김종영 · 김위한 ·
곽경호 · 장용훈 · 이홍희 ·
고우현 · 김정숙 · 김봉교 ·
한혜련 의원 (22명)

1. 개정이유

- 대기오염으로 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조문의 통합 및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
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물질로 오존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대기오
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₃)을 추가함(안 제2

조~제4조)

- 다. 경보 대상지역을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권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오존(O₃)을 추가하여 규정(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8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5.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mu\text{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mu\text{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오존(O_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₃)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오존(O₃) 농도”란 도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 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5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의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

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 건강보호 및 대기 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제1항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나. 오존

경보단계	도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라.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마.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바.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사.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정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₃)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6.7.26.>]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

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5.12.10.>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덕환
입 안 주 무 부 서	보건환경연구원	통 보 (조 치) 일	2017. 9. 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미세먼지 및 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검 토 의 견 서

☐ 조례명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의견 없음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 발령 또는 해제 시, SMS로 도민에게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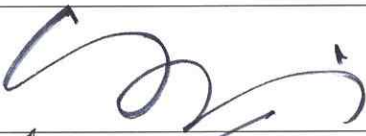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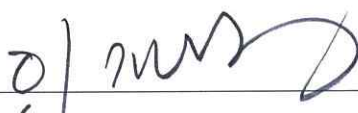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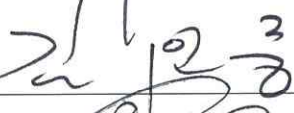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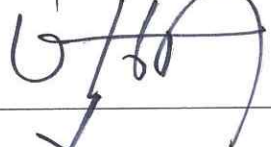
- 본 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대기오염 경보대상 물질 추가, 경보 대상지역 변경이 주요 내용이고, 기 수행중인 대기오염 경보 발령 및 해제 전파에 관한 업무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지방환경연구사 김지영 (054-339-8173)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이관철		
장대현		
이진식		
김인중		
황병직		
홍승민		
강영석		
조현일		
김리식		
김영서		
이권현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조국홍	조국홍	
김종영	김종영	
김의환	김의환	
차경호	차경호	
장용권	장용권	
이흥희	이흥희	
고우현	고우현	
김경숙	김경숙	
김영하	김영하	
황혜연	황혜연	
이운석	이운석	